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임차인이 혼인·이혼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잔여가구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임차인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잔여가구원은 퇴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따라,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치료·요양 등을 위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하여 퇴거하는 경우 잔여가구원은 임차권을 양도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제3호중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”
를 “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
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보
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퇴거하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)	제48조(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)
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“근무·생업·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<u>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</u> ,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	3. ----- -- <u>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퇴거하고</u> ----- --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580